

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보고

의안 번호	4325
----------	------

2025. 9. 8.
총무위원회

1. 심사 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8. 28. 광양시장

나. 회부 일자: 2025. 8. 29. 회부

다. 상정 일자: 제34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(2025. 9. 8.) 상정,
“원안의결”

2. 제안 요지

가. 제안 이유

- 2025. 3.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「문화한국 2035」 ‘문화도시 3.0’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, 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문화 사업을 수행하면서 쌓은 구축된 거버넌스와 역량을 활용하여 장기적이고 연속성 있는 문화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,
- 2025. 12. 31.로 만료되는 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위탁기간에 대해 「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1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에 재계약하고자 함.

나. 주요 내용

- 「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」 운영 전반

【참고 1. 위탁시설 현황】

- 시설명: 「광양시 생활문화센터」
- 위치: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052, 2층
- 면적: 198㎡

【참고 2. 위탁사항】

- 위탁방식: 행정재산의 민간위탁
- 위탁기간: 2026. 1. ~ 2028. 12. (3년)
- 수탁자선정: 재계약
- 위탁범위: 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 및 생활문화센터 시설관리 전반
- 소요예산: 2,100,000천원 (3년)

3. 검토 의견

가. 동의안 제출 취지

- 이 동의안은 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의 효율적·체계적 운영을 위해서 「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1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전문성을 가진 수탁자에게 재계약하고자 제출한 것임.

나. 주요 내용

1) 민간위탁 근거

- 「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4조에 의한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로서,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이며,
- 「광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」 제14조에서는 시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에 따라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, 「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7조에서 시장은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

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, 민간위탁 방식으로의 운영이 가능할 것임.

2) 민간위탁 추진 적정성 여부

-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사무 방식으로 사무 수행 가능성: 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은 전문성과 유연성이 요구되며, 신속하고 창의적인 문화도시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직영 운영 대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: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, 문화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공성 확보가 용이하며, 위탁계약, 지도·점검, 정산 절차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.
-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: 인건비 절감 및 유연한 인력 운영이 가능하며, 민간의 자율성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모사업 등을 통해 재원 확보 및 비용의 효율성 증대로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.
- 민간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: 행정·시민·전문가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효율적·체계적 운영이 가능하며, 지역 문화예술 경험과 기획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이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서비스 제공에 전문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-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: 참여자 수나 만족도 같은 수치로 성과를 쉽게 평가할 수 있고, 위탁운영 실적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·평가하여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위탁 사무의 성과 측정이 용이함.

-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: 민간위탁 기관은 사업계획과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고, 회계법인 감사까지 거친 후 제출해야 하며,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과 잔액 정산, 수시 점검을 통해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함.
- 종합의견: 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는 2025년 「광양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」 개최를 통해 2024년 광양시 문화도시 사업 실적보고 결과,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문화조직경영 전문조직의 문화적 역량 활용, 역사문화 공간들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발굴 및 다양한 문화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강점이 있음. 이에 행정비용 절감과 문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 등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문화도시사업단 재계약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3) 위탁 기간의 적절성 여부

- 「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17조에서 위탁 기간은 위탁사무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. 다만,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음.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에서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명시하고 있어 부서에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설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) 위탁 방법의 투명성·객관성

- 위탁 방법: 민간위탁 재계약
 - ※ 「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18조(재계약)에 시의회의 사전동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할수 있음.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사무 감사 결과와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함.

- 「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에 근거하여 투명하고, 공정하게 위탁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사료됨.

5) 기타 위탁내용 등

- 운영인력

구 분		주요 업무
센터장	1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센터 업무 총괄 및 대외 활동 •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의한 사업 기획·관리 총괄 • 팀장 및 팀원 채용·관리 등
사무국장	1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추진 방향 및 목표 설정 • 사업 기획 및 운영 관리 • 시민, 단체(기관) 거버넌스 구축 및 네트워크 관리
사업기획팀	2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 세부 설계 및 실행·관리 • 사업 기록 및 자료화 • 생활문화센터 시설 관리 및 대관 등
사업지원팀	3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행정 및 회계 업무 • 문화도시 조성사업 홍보 및 마케팅 등

- 연도별 지원액

(단위: 천원)

구 분	사 업 명	2026년	2027년	2028년	합계
총계		700,000	700,000	700,000	2,100,000
사업비 합계		310,000	310,000	310,000	930,000
【이어주고】 문화시민 육성 문화다양성 확보	• 광양시민원탁 '공동'총회	5,000	5,000	5,000	15,000
	• 일상문화아지트 '동행상점'	25,000	20,000	20,000	65,000
	소계	30,000	25,000	25,000	80,000
【함께하고】 도시 전환을 위한 시민의 도전	• 문화지소 브랜드 프로그램 운영	20,000	20,000	20,000	60,000
	• 아트살롱(공연&토크) 운영	20,000	25,000	25,000	70,000
	• 문화원남길 상징조형물 조성 등	15,000	10,000	10,000	35,000
	• 문화원남길 브랜드 축제 운영	30,000	35,000	35,000	100,000
	• 광양원남행차 재현 행사	30,000	35,000	35,000	100,000
	소계	115,000	125,000	125,000	365,000

【초청하고】 교류를 통한 관계의 형성	• 중마교역소 시민클럽 운영	30,000	30,000	30,000	90,000
	• 중마교역소 토요일피크닉 운영	15,000	10,000	10,000	35,000
	• 지역 청년작가 미디어아트랩 육성	70,000	70,000	70,000	210,000
	소계	115,000	110,000	110,000	335,000
【파견하고】 국제적 예술교역 플랫폼 기반 구축	• 국외 자매도시와 예술교역 추진	25,000	25,000	25,000	75,000
	• 광양아트마켓 추진	25,000	25,000	25,000	75,000
	소계	50,000	50,000	50,000	150,000
운영비 합계		390,000	390,000	390,000	1,170,000
경영관리 (인건비, 운영비, 시설관리비 등)	인건비 - 센터장(37,200), 사무국장(36,000), 팀장 2명(69,600), 팀원 3명(86,400)	229,200	229,200	229,200	687,600
	후생복지비 - 사회보험(32,000), 퇴직적립금 및 각종 수당 등(76,800)	108,800	108,800	108,800	326,400
	제세공과금 - 전기, 수도, 전화요금 등(8,500)	8,500	8,500	8,500	25,500
	시설관리비 - 생활문화센터 유지보수 등(10,000)	10,000	10,000	10,000	30,000
	기타 - 일반수용비(22,500), 여비(9,000), 업무추진비(2,000)	33,500	33,500	33,500	100,500

다. 종합 의견

- 이 동의안은 상위 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이행하였으며,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위탁 추진이 적절하다고 생각함.
- 또한, 위탁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과 다양한 행정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행정조직의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- 다만, 위탁 과정에서 공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회의록 참조.

5. 심사 결과: 원안의결(출석위원 6명)

6. 소수의견의 요지: 해당 없음.

붙임 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1. 위탁시설 및 사무

- 시설명: 광양시 생활문화센터
- 위치: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052, 2층
- 규모: 면적 198㎡
- 위탁사무: 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 및 생활문화센터 시설관리

2. 위탁사항

- 수탁자: 광양시 문화도시사업단(단장 박시훈)
- 위탁기간: 2026. 1. ~ 2028. 12.(3년)
- 위탁내용: 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 전반
 -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의한 사업의 기획·관리 총괄
 - 문화도시 조성 시민 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
 - 문화도시 사업 프로젝트 실행 및 매개
 - 기타 광양시 문화도시 관련 연계사업 지원
 - 생활문화센터 시설 관리 및 대관 업무
 - 그밖에 문화도시 사업추진을 위하여 '위탁자'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
- 소요예산 : 2,100,000천원(3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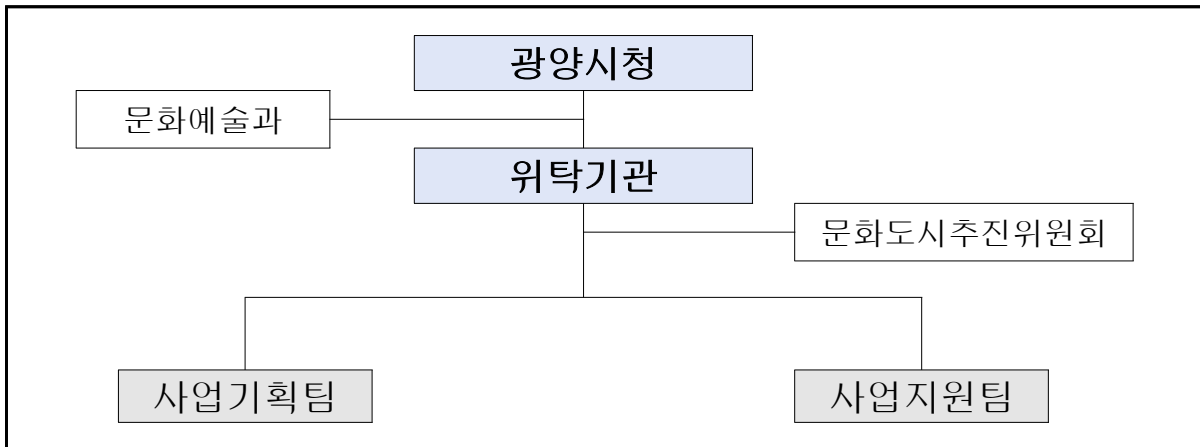
설명자료

1. 운영계획

○ 운영개요

- 명 칭: 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
- 위 치: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052(2층), 생활문화센터
- 인력구성: 7명(센터장 1, 사무국장 1, 팀장 2, 팀원 3)
- 운영방법: 문화도시 사업을 전문적·효율적으로 수행할
있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·단체에 위탁운영

○ 조직구성(안)



- 인력구성 : 7명

구 분		주요 업무
센터장	1명	• 센터 업무 총괄 및 대외 활동 •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의한 사업 기획·관리 총괄 • 팀장 및 팀원 채용·관리 등
사무국장	1명	• 사업추진 방향 및 목표 설정 • 사업 기획 및 운영 관리 • 시민, 단체(기관) 거버넌스 구축 및 네트워크 관리
사업기획팀	2명	• 사업 세부 설계 및 실행·관리 • 사업 기록 및 자료화 • 생활문화센터 시설 관리 및 대관 등
사업지원팀	3명	• 행정 및 회계 업무 • 문화도시 조성사업 홍보 및 마케팅 등

○ 소요예산 : 2,100,000천원(3년)

(단위: 천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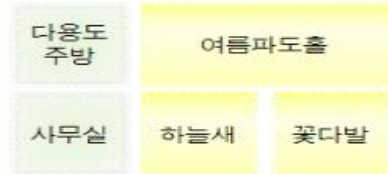
구분	사업명	2026년	2027년	2028년	합계
총계		700,000	700,000	700,000	2,100,000
사업비 합계		310,000	310,000	310,000	930,000
【이어주고】 문화시민 육성 문화다양성 확보	• 광양시민원탁 '공동'총회	5,000	5,000	5,000	15,000
	• 일상문화아지트 '동행상점'	25,000	20,000	20,000	65,000
	소계	30,000	25,000	25,000	80,000
【함께하고】 도시 전환을 위한 시민의 도전	• 문화지소 브랜드 프로그램 운영	20,000	20,000	20,000	60,000
	• 아트살롱(공연&토크) 운영	20,000	25,000	25,000	70,000
	• 문화원남길 상징조형물 조성 등	15,000	10,000	10,000	35,000
	• 문화원남길 브랜드 축제 운영	30,000	35,000	35,000	100,000
	• 광양원남행차 재현 행사	30,000	35,000	35,000	100,000
	소계	115,000	125,000	125,000	365,000
【초청하고】 교류를 통한 관계의 형성	• 종마교역소 시민클럽 운영	30,000	30,000	30,000	90,000
	• 종마교역소 토요일피크닉 운영	15,000	10,000	10,000	35,000
	• 지역 청년작가 미디어아트랩 육성	70,000	70,000	70,000	210,000
	소계	115,000	110,000	110,000	335,000
【파견하고】 국제적 예술교역 플랫폼 기반 구축	• 국외 자매도시와 예술교역 추진	25,000	25,000	25,000	75,000
	• 광양아트마켓 추진	25,000	25,000	25,000	75,000
	소계	50,000	50,000	50,000	150,000
운영비 합계		390,000	390,000	390,000	1,170,000
경영관리 (인건비, 운영비, 시설관리비 등)	인건비 - 센터장(37,200), 사무국장(36,000), 팀장 2명(69,600), 팀원 3명(86,400)	229,200	229,200	229,200	687,600
	후생복지비 - 사회보험(32,000), 퇴직적립금 및 각종 수 당 등(76,800)	108,800	108,800	108,800	326,400
	제세공과금 - 전기, 수도, 전화요금 등(8,500)	8,500	8,500	8,500	25,500
	시설관리비 - 생활문화센터 유지보수 등(10,000)	10,000	10,000	10,000	30,000
	기타 - 일반수용비(22,500), 여비(9,000), 업무추진 비(2,000)	33,500	33,500	33,500	100,500

2. 시설현황

- 시설 명: 광양시 생활문화센터
- 위치: 광양읍 인덕로 1052, 2층
- 규모: 면적 198㎡

구분	면적(㎡)
합계	198
운영사무실	67
회의 및 커뮤니티 공간(무료 대관)	131

※ 생활문화센터 공간배치도



3. 민간위탁의 적정성 자체검토 결과

-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
 - 「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4조 및 「광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」 제13조, 제14조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 사무
 - 문화도시센터 운영은 전문성과 유연성이 요구되며, 민간위탁을 통해 신속하고 창의적인 문화도시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직영 운영 대비 경쟁력 확보 가능
- 서비스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 - 위탁사무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, 문화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공성 기반 확보 용이
 - 위탁계약, 지도·점검, 정산 절차 등을 통해 민간운영 중에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 구조 유지 가능
-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
 - 직영 운영시 인력 충원, 프로그램 기획, 운영 등에 따른 행정 부담 및 추가예산 소요가 불가피
 - 민간위탁을 통해 인건비 절감 및 유연한 인력 운영이 가능하며, 민간의 자율성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모사업 등을 통해 재원 확보 및 비용의 효율성 증대

○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

-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기획 및 구성, 행정-시민-전문가 거버넌스 구축과 네트워크 관리 등으로 사업 전반의 효율적·체계적 운영 용이
-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 경험, 기획력 등을 보유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서비스 제공 가능

○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

- 프로그램 참가자 수, 주민만족도 등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성과지표 설정이 가능하여 평가 용이
- 위탁운영 실적 보고 및 평가 체계를 통해 연간 운영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계 운영

○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
- 「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에 따라 연 1회 이상 지도·점검 시행, 민간위탁금 잔액 정산 등을 통해 투명한 운영 관리 가능
- 위탁기관은 사무 위·수탁 협약에 따라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,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후 제출하며, 민간위탁금 상시 점검 등 가능

❖ **최종 검토 결과**

2025년 「광양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」 개최를 통해 2024년 광양시 문화도시 사업 실적보고 결과,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문화조직경영 전문조직의 문화적 역량 활용, 역사문화 공간들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발굴 및 다양한 문화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강점이 있음. 이에 행정비용 이에 절감과 문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 등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문화도시사업단 재계약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

4.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

- 추진방안: 민간위탁 재계약
- 위탁기간: 2026. 1. 1. ~ 2028. 12. 31.(3년)
- 구 성: 7명(센터장 1, 사무국장 1, 팀장 2, 팀원 3)
- 운 영: 광양문화도시센터(광양문화도시사업단)
- 주요기능: 「문화한국 2035」 ‘문화도시 3.0’에 발맞춘 문화도시 경영체계 구축 및 문화도시 사업 전반 총괄 기획·운영·관리 등
- 위탁사무
 -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의한 사업의 기획·관리 총괄
 - 문화도시 조성 시민 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
 - 문화도시 사업 프로젝트 실행 및 매개
 - 기타 광양시 문화도시 관련 연계사업 지원
 - 생활문화센터 시설 관리 및 대관 업무
 - 그밖에 문화도시 사업추진을 위하여 ‘위탁자’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